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934호(號) 1933(昭和 8)년 6월 22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79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[朝鮮總督府鐵道], 사설철도(私設鐵道), 궤도(軌道) 및 항로(航路) 간(間)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칙[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3(昭和 8)년 6월 22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6조(條)의2 국선(局線)과 사설철도선(私設鐵道線) 간(間) 침대차(寢臺車)를 직통운전(直通運轉)하는 경우는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의 침대요금(寢臺料金)을 수수(收受)하고 상호침대권(相互寢臺券)의 발매(發賣)를 행함.

전항(前項)의 경우에 있어서 침대여객취급(寢臺旅客取扱)에 관한 규정(規定)은 국(局)이 정한 바[所定]에 따름.